위임계약서

국내외 지적재산권 업무에 관하여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IPS(아이피에스)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1-18번지에 주소를 둔리&목특허법률사무소(이하 "을"이라 한다)간에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위임업무)

본 계약에 의해 "갑"이 "을"에게 위임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국내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의장, 상표)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제반업무
- 2. 해외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의장, 상표)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제반업무
- 3. 각종 심판에 관련된 업무
- 4. 각 권리의 등록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
- 5. 기타 "갑"이 의뢰한 지적재산권관련 제반업무

제 2 조 (을의 의무)

- ① "을"은 "갑"이 위임한 제 1 조의 업무에 대하여 그 중요성 및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출원에서 권리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위임업무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"갑"에게 통지한다.
- ② "을"은 "갑"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"갑"과의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제 3 자에게 재위임하거나, 그 위임을 거절할 수 없다.
- ③ "을"은 본 계약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"갑"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"갑"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위임 비용)

- ① "갑"은 제 1 조에 명시된 위임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<별첨1>의 대리인수수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"을"에게 지급한다.
- ② "갑"이 "을"에게 위임한 해외 특허출원, 등록 및 분쟁사건에 대하여 외국 현지 대리인 과 정당한 업무 수행중 발생한 "을"의 통신 및 우편요금 등은 "갑"이 실비로부담하는 것 으로 한다.

④ 상기 제 1항에 해당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"갑"과 "을"이 별도 협의하여 조정하되 통상 업계의 보수수준과 관행을 참조하기로 한다.

제 4 조 (비용지불 방법)

- ① "을"은 위임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, 제 3조 제 1 항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"갑"에게 청구하고, "갑"은 청구된 비용내역을 검토 및 확인 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되면, 관련비용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"을"은 "갑"의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용 청구서가 "을"의 사무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"갑"에게 송부하여야 하며, 비용청구의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"을"이 감수해야 한다.

제 5 조 (계약의 발효 및 소멸)

- ① 본 계약은 200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고, 본 조 제 2 항에 의거 소멸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 한편, "갑"과 "을"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중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, "을"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류중인 위임업무에 대한 "갑"과의 합의를 통한 완전한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계약해지로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"을"이 부담한다.

제 6 조 (통지의무)

"갑"과 "을"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기타사항)

본 계약의 해석상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한다.

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"갑"과 "을"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04 년 7월 1일

"갑"

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 주식회사 IPS

대표이사 장호승 (인)

"을"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1-18 리&목특허법률사무소

변리사 이 영 필



대리인 수수료 (부가세 별도)

1. 국내출원관련 수수료

		특 허	실용신안	이중출원 (특허+실용)	의 장	상 표	비고	
기본수수료		₩810,000 ₩900,000	₩630,000 ₩700,000	₩1,140,000 ₩1,300,000	₩300,000 ₩340,000	₩200,000 •₩223,000	출원전에 선행기술(상표)	
추가	독립항1항초과	90,000원/항 			추가물품당 200,000원	지정상품 추가마다 5,000원	발견으로 출원이 불가한 경우, 특허·실용·의장은	
	종속항추가	27,000원/항 30,000원/항					100,000원, 상표는 50,000원을 제하고 나머	
	명세서·도면 20면초과	18,000원/면 - 20,000원/면					지는 반환	
국	내우선권주장	1주장마다 50,000원						
우선심사신청		₩200,000			₩150,000			
성공사례금		착수금(기본+추가)의 70%			착수금(기본+추가)의100 %			
기타		※ 기술평가청구 수수료 : 50,000원 ※ 분할출원은 기본착수금의 50%(가산료 없음, 그 외 신규와 동일) ※ 의장공개신청 50,000원, 출원인명의변경 100,000원, 권리이전등록신청 200,000원 (지방세 별도), 출원인표시변경·출원인정보변경 50,000원, 심사관면담 300,000원/ 회, 제증명발급 50,000원						

2. 국내출원외 수수료

		심판	특허법원 소송	대법원 상(고)소	이의신청 이의답변	감정	경고	정보제출	자료조사
특/실	사정계	₩1,000,000 이상	₩3,000,000 이상	₩3,000,000 이상		₩2,000,000	₩300,000		₩300,000
기본	당사자계	₩3,000,000 이상	₩5,000,000 이상	₩3,000,000 이상		이상	이상	₩500,000	이상
상/의 기본	사정계	₩500,000 이상	₩2,500,000 이상	₩3,000,000 이상	₩1,000,000	₩1,500,000 이상	₩300,000 이상	₩300,000	상표 ₩50,000 의장 ₩300,000
	당사자계	₩2,500,000 이상	₩3,500,000 이상	₩3,000,000 이상					
보충서,변박·반박서,준비서면,구두심리등원시 매회당 400,000원 외국문헌 번역료 별도(한글A4 1면 기준 영어 20,000원, 일어 15,000원, 기타어 30,000원)					복수경고시 추가경고마 다 200,000원	외국문언 번역료 좌동	동일(신규)성 자료 300,000원, 진보성 자료 자료당 100,000원, 관련자 료 자료당 10,000원		
성공	성공사례금 착수금(기본+추가)의 100%			없 음					

3. 해외출원관련 수수료

구분	항목	변리사 수수료 (부가세10%별도)	관납료 또는 현지대리인 수수료
3	착수금	₩1,080,000 ₩1,200,000	
	PCT 출원료	-	아래 ※참조
PCT 국제단계	예비지정확인	-	아래 ※참조
101 국제단계	우선권인증사본제출	-	₩13,100(특허) ₩12,200(실용)
	국제공개용 번역문(영어) 제출	₩30,000/면	W 12,200(28)
	예비심사청구료	₩300,000/1발명	심사료: ₩150,000 취급료: ₩190,000
	착수금	₩1,350,000/국(미국,EP) ₩1,500,000/국(미국,EP) ₩1,080,000/국(기타국) ₩1,200,000/국(기타국)	,
각국 국내단계	번역료	한→영:₩30,000/A4 1면 한→일:₩25,000/A4 1면	
	해외진행비용 예치금		\$4,000/국 ≒4,500,000원/국
	중간비용	₩300,000 (최초1회응신시)	7 - 7 - 7 - 1
	성공사례금	착수금의 70%	
기타	해외의장 출원비용	₩500,000	
	도면 작성료	₩50,000/장(A4)	

[※] 중간비용은 현지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, 이와 관련한 국내 변리사수수료외의 번역과 통신료 등은 실비정산함.

[※] 해외직접출원시는 각국 국내단계와 동일